

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년 1월 일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방위지원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읍·면별 최소위원을 2인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위원을 위해 구성인원을 조정하고
- 읍·면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을 명문화하여 후방지역 방위지원 업무를 체계화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당연직 위원 6인을 포함하여 "10인이상 20인이하"로 규정된 위원수를 "10인이상 25인이하"로 개정(안 제2조)
- 나. 읍·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반 구성을 명문화하여 읍·면의 방위지원활동업무를 제도화 (안 제4조제2항)
- 다. 읍·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반의 운영직책을 명시하여 지원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 (안 제4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"10인이상 20인이하"를 "10인이상 25인이하"로 한다.

제4조제2항중 "기획실장"을 "기획감사실장"으로 하여 동조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,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읍·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반은 군지원본부에 준하되 실정에 따라 분야별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하고, 상황요원과 분야별 지원반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 읍·면의 본부장은 읍·면장으로하고,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으로 하며,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업무담당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,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 ~ ④(생략)</p> <p>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(생략) (신설)</p> <p>②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, 상황실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며,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 (신설)</p> <p>③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</p>	<p>제2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10인 이상 25인 이하 ----- -----</p> <p>② ~ ④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읍·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반은 군지원본부에 준하되 실정에 따라 분야별 지원반을 통합하여 운영하고, 상황요원과 분야별 지원반원을 조정할 수 있다. ③(현행 제②항과 같음)----- ----- 기획감사실장 ----- -----</p> <p>④읍·면의 본부장은 읍·면장으로 하고,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으로 하며,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업무담당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 ⑤(현행 제③항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췌

[통합방위법]

제5조(지역통합방위협의회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하에 특별시·광역시·도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시·도협의회"라 한다)를 두되, 그 의장은 시·도지사가 된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시·도협의회와 시·군·구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합방위 대비책
2. 을중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(시·도협의회의 경우에 한한다)
3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
4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대책
5.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④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

제9조(통합방위지원본부) ①시·도지사 소속하에 시·도통합방위지원본부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·읍장·면장·동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·읍·면·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.

②시·도통합방위지원본부와 시·군·구·읍·면·동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"각 통합방위지원본부"라 한다)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
2.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
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·지원
4.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
5. 기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③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.

[통합방위법시행령]

제14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) ①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, 인력동원, 건설·수송, 의료·구호, 통신, 보급, 홍보 및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.

③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, 읍·면·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·면장·동장이 되도록 한다. <개정 2002.3.30>

④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특별시·광역시·도·시·군·자치구·읍·면·동의 주사무소내에 두도록 한다.